

산자부, 환경규제 예고제 도입

환경규제예고제의 전면 도입이 추진되고 오염행위 단속을 전제로한 배출시설 허가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또한 낙후지역으로의 기업이전 촉진을 위해 지역개발보조금제도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7월 16일 프라자호텔에서 산·학·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국환 장관 주재로 산업환경 및 입지분야 산업경쟁력 전략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하반기부터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가청정센터는 산업환경 분야 전략을 통해 청정생산 효율성을 2005년에는 99년에 비해 2배, 2010년에는 4배까지 높인다는 목표 아래 내년에 2곳의 지역청정생산보급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환경규제를 도입할 때 산업계의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5~10년에 앞서 예고하는 환경규제예고제를 전면 도입하는 한편 환경규제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규제영향평가서를 공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염행위 단속을 전제로 한 배출 시설 설치허가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배출부과금제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및 수질개선부담금 제도의 개선 등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 재활용을 개별기업

환경규제예고제의 전면 도입이 추진되고 오염행위 단속을 전제로한 배출시설 허가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또한 낙후지역으로의 기업이전 촉진을 위해 지역개발보조금제도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에서 공단 단위로 확대, 폐기물제로를 지향하는 생태산업공단 (Eco-Industrial Park)을 2개 공단에 시범도입하는 한편 전자, 자동차, 철강, 섬유 등 주요업종의 청정기술 개발에 향후 10년간 5천억원을 투자하고 청정생산비전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산업연구원은 산자부와 타부처간 지역자원사업의 연계를 강화키 위해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대한 협의·조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도권에 대한 경직적인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낙후지역으로 기업이전을 촉진키 위해 지역개발보조금제도를 신설할 것으로 제안했다.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 가동

한국자원재생공사는 8월부터 폐기물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폐기물 적법처리 입증정보 시스템' (www.wms-net.or.kr)을 본격 가동한다고 지난 7월 2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폐기물 처리증명을 위해 발행하던 기존의 6장짜리 종이전표를

인터넷에서 구현해 폐기물의 발생과 운송상태,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세계 최초의 방식으로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것이 자원재생공사의 설명이다. 특히 기존의 종이전표가 전자인계서로 대체됨에 따라 종이전표 인쇄와 관리, 우편발송, 대장작성, 실적보고 등의 업무가 생략돼 연간 2천600억원의 비용과 3천만시간의 행정업무가 절감될 것으로 공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현재 1천542개 업체가 참여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시스템의 사용 대상을 모든 사업장의 폐기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의 방법과 용도를 확대하고 감염성 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지난 8월 7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침출수의 발생이나 부패 등으로 환경문제를 야기 할 우려가 없는 고무나 플라스틱, 금속류, 목재, 유리 등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기간이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환경부는 또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형광등과 전지, 어망, 점토광물인 벤토나이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재 등을 추가했다.

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을 관리 강화를 위해 환경부는 감염성 폐기물 수집·운반 업자의 보관기간을 5일에서 3일로, 처리업자의 보관기간은 7일에서 5일로 각각 단축해 2차 감염을 예방하기로 했다.

특히 태반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재활용하는 태반은 발생 시점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냉동시설에 보관도록 하고 의료기관 및 담당 의사의 이름을 기재하는 '배출실명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탈지면 등을 배출하는 장례식장도 감염성 폐기물 발생기관으로 지정하고 감염성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업자가 다른 폐기물과 별도의 시설과 장비,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밖에도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의 처리나 활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변경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면적이 15만m² 이상인 매립시설은 반드시 지진안전성을 고려해 시설을 조성하도록 했다.

부실 환경영향평가가 처음으로 배상책임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환경피해의 배상책임이 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환경 피해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결정을 계기로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했을 경우 사후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8월 5일 경기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H아파트 주민 합정진씨(39)가 인근 경부고속도로의 소음으로 수면방해 등 정신적 피해를 겪는다면 200만원의 배상과 방음벽 설치를 요구한 건에 대해 "토지공사와 도로공사, 용인시, 현대건설㈜은 연대해 34만원을 지급하고 방음벽 설치 등 소음방지 대책을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합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10층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주간 69dB(데시벨), 야간 66dB로 주거지역의 도로변 소음환경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을 훨씬 초과했다.

토지공사는 1995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당시 소음저감 대책을 시행해 이 아파트 10층의 예측소음도를 주간 62.5 dB, 야간 52.3dB로 하겠다고 밝혀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원충녹지 조성 등의 소음저감 대책을 시행하지 않

았다는 것.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결정을 계기로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했을 경우 사후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환경등 통합영향평가제 이달부터 시행

서울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환경이나 교통,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개발사업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영향평가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0일 제정, 공포한 이같은 내용의 "환경·교통·재해 영향 평가조례"를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8월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에서 정한 영향평가 대상 사업 규모의 50% 이상이면 시에서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일부 사업은 법에서 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사업 규모의 30% 이상이면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등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산자부, 환경영향제제 (ISO14001) 인증제도를 민관인증제도로 전환

2002.1.14부로 개정·공포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 규정인 동법 시행령이 2002.8. 1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의 환

경경영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이 강화되었음.

공공기관은 환경영영체제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자금지원 등 기업지원시 가점부과 등의 방법으로 혜택부여 사업자단체 등과의 협조를 통해 산업환경실천과제를 발굴·고시하고, 이에 포함되며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과 기술개발자금 등이 지원됨.

이와 아울러, 산업자원부는 환경영영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영영체제(ISO14001) 인증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민간주도적 인증제도로 전환하였음.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지정취소 등 인증과 관련된 사항을 민간인증체제로 전환하는데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 다만, 환경영영체제인증을 국제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을 인정해주는 인정기관에 대한 관리규정을 신설하고, 인정기관에 대한 지정절차와 그 인정기관이 수행하는 인정업무의 범위, 인정심사원의 자격, 인정기준 등을 업무규정에 정하도록 하였음.

시민신청 대기·소음·진동 검사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대기·소음·진동검사를 해주기로 했다.

지난 8월 4일 연구원에 따르면 생활의 질이 향상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대기와 소음·진동 발

굴뚝으로 오염물질을 내뿜는 공장에 대해 물리는 대기오염 배출부과금 규모가 내년부터 크게 늘어난다.

환경부는 지난 7월 30일 연료 종류나 지역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등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기 배출부과금 제도를 단순화하고, 질소산화물을 새로 부과대상에 포함하는 개선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생과 관련, 시민들이 객관적인 검사를 바라고 있어 의뢰가 있을 경우 검사를 해 주기로 했다.

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찾아가거나 팩스(☎760-1333) 또는 전화(760-1213)로 신청하면 연구원이 20일 이내 출장 검사를 하게 된다. 검사 항목은 암모니아와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가스상 물질과 먼지, 카드뮴 등 입자상 물질, 악취 검사 등이다.

검사 수수료는 출장비 2만~6만원과 검사 항목에 따라 600원에서 1만6천 300원을 의뢰자가 부담해야 된다.

부산등 5개시 물이용 수도물값 30~40% 인상

이달부터 부산·대구·울산·대전·광주 등 5개 광역시와 마산·충주 등 인근 48개 시·군 지역의 수도요금이 평균 30~

40%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2005년까지 이 지역 상수원의 수질을 1~2급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을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물이용 부담금(t당 100~120원)을 별도로 거둘 계획이기 때문이다.

대기오염물 배출업체 부담금 크게 늘린다

먼지 1kg 770원 → 4천원 인상 등

굴뚝으로 오염물질을 내뿜는 공장에 대해 물리는 대기오염 배출부과금 규모가 내년부터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발전, 철강, 유리, 제지 등 연료를 많이 쓰는 업계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 7월 30일 연료 종류나 지역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등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기 배출부과금 제도를 단순화하고, 질소산화물을 새로 부과대상에 포함하는 개선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특히 현행 오염처리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방지비용 등을 반영해 오염물질별 부과료율을 크게 손질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먼지는 배출량 kg당 7백70원에서 4천원 정도로 대폭 인상하고, 산성비와 오존 오염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에는 kg당 1천 원 정도씩을 추가로 물릴 방침이다.

반면 아황산가스를 포함한 황산화물(SOx)의 경우 kg당 5백원에서 4백63

원 정도로 내린다.

대신 황함유량 0.5% 이하의 저황유를 사용하는 대전, 창원 등 전국 23개 지역에 대한 황산화물 배출부과금 면제 혜택은 없애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현행 배출허용농도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부과하는 기본부과금과, 기준을 초과했을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 구분을 없애고 전체 배출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출부과금을 물리기로 했다.

소량 폐기물을 공동수거제 확산

소량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한 공동수거제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3월 폐유와 폐유기용제, 기름걸레 등 연간 2t 이하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와 폐기물수거업자를 연결시키는 “폐기물 공동수거제”를 도입한 후 현재까지 대구 염색공단과 성서공단 등 지역 13개 공단 650개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개월여간 대구·경북 지역에서 380t의 폐기물이 공동 수거됐으며 앞으로 연간 1천여t의 폐기물이 공동수거제를 통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김천 대불공단 50개 업체가 8월부터 폐기물 공동수거제에 동참하기로 하는 등 지역 폐기물 배출업소의 참여가 잇따라 폐기물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대구환경청은 예상하고 있다.

소량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한 공동수거제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3월 폐유와 폐유기용제, 기름걸레 등 연간 2t 이하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와 폐기물수거업자를 연결시키는 “폐기물 공동수거제”를 도입한 후 현재까지 대구 염색공단과 성서공단 등 지역 13개 공단 650개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공장 악취·소음 징계도 책임

공장 주변에 아파트 건축을 허가한 후 공장의 악취나 소음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소홀히 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 경기 화성시 봉담읍 A아파트 주민 1602명이 30여m 떨어진 H제관에서 나오는 악취와 소음 매연 등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 공장과 화성시, 시공사인 S산업개발을 상대로 28억여원의 배상을 신청한 건에 대해 “3자는 공동으로 1억867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결정문에서 “화성시는 기존 H제관 옆에 들어서는 이 아파트의 악취와 소음 피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나 건축승인 과정에서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차단녹지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입주 후에도 악취나 소음 배출에 대한 지도단속을 소홀히 해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앞으로 환경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아파트 사업 승인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위는 또 “S산업개발도 악취와 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벽 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H제관은 악취와 소음이 배출 허용기준을 모두 초과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조정위는 배상액은 이 아파트 주민들의 거주기간과 입주층수에 따라 신청인 1600여명 중 800여명의 피해만 인정해 산정했고 아파트값 하락 주장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중 거래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적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오염업소 1천217개 적발

환경부는 최근 전국 2만295개의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단속해 1천217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7월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중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오염방지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주)공영사와 고려아연(주) 온산제련소, (주)한국티타늄공업(주), (주)충무화학 등 515개 사업장에 대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발 조치했다. 또 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동운산업(주)과 주그린제지, 블루텍스(주), 다섬섬유(주) 등 32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물렸다고 밝혔다.

오염 물질배출 32곳 적발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6월달 자체와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28개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 32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조업정지 및 개선,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했다.

환경청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방출한 산업 등 4개 업소에 대해 개선명령 조치하고,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포장 등 6개 업소에 대해 조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했다.

또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변경 확인없이 폐기물을 처리한 산업 등 2개업소를 고발조치하고 지정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병원 등 6개 업소에 대해 조치명령과 함께 1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

오는 2005년부터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의 19개시에 대기오염 배출 총량제를 도입, 이들 지역내의 발전소와 공장 등이 연간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

환경부는 최근 전국 2만295개의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단속해 1천217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7월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중 무어가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오염방지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주)공영사와 고려아연(주) 온산제련소, 한국티타늄공업(주), (주)충무화학 등 515개 사업장에 대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발 조치했다.

을 제한한다.

또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경유차만 적용된 대기환경 개선 부담금을 휘발유 자동차에도 부과하고 노후차의 조기폐차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최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대기질개선 특별대책 시안”을 발표하고 지난 7월 25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대강당에서 관련 지자체와 산업체, 전문가, 시민단체 및 언론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대기오염 물질의

광역적 이동 등을 감안, 서울과 인천시 전역 및 경기도 19개시가 수도권 대기 질개선 특별대책의 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 사상 처음으로 대기오염 물질의 지역별 배출허용 총량제를 실시한다.

수도권의 대기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평택의 포승지구를 비롯, 충남의 보령 화력발전소 등 4개의 화력발전소

도 관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내의 발전소와 공장 등 대기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들은 2005년부터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4가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규제 받는다.

배출총량 규제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기구를 이용한 경제적 유인수단인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된다.

또 수도권 대기질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환경부 내에 정부 부처와 시·도가 참여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개선 부담금제 시행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에 배출하는 각종 산업폐기물 등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를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처리량이 매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해양에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저감시키는 한편, 부담금 징수재원으로 배출해역관리, 오염해역준설, 수중침적폐기물의 수거·처리사업, 연안여장정화·정

비사업 등 해양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그 동안 동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여러차례의 공청회 등 이 해당사자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오염정도, 재활용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당 800원~1,872 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

천안/폐수배출업소 법규위반 적발

지난 상반기동안 천안지역 조사대상 폐수배출업소의 약 7%가 각종 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돼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상반기동안 상수원상류 배출업소 166곳, 유독물등록업소 108곳, 세차시설업소 142곳, 위탁관리업소 67 곳 등 모두 483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3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명행했다.

위반사항을 세분하면

- △ 배출허용기준초과가 9건
- △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3건
- △ 무허가 신고시설 설치운영 2건
- △ 기타 운영일지 미작성 19건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직산읍 군서리 K제약 등 9곳은 개선명령을, 배출폐수를 부적정하게 위탁처리한 병천면 송정리 N식품 등 3곳은 조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무허가로 영업을 해 온 병원이나 업체 등 환경오염 배출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8월 5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4분기 동안 4천380개소의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 3.2%에 해당하는 위반업소 139곳을 적발했다”며 “이번에 적발된 사업체 중에는 병원이나 의원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무허가시설을 사용한 업성동 C공장과 상환지역에 L모씨가 운영하는 공장은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성환읍 대홍리 E식품 등 12곳은 경고조치했다.

외에도 공공수역 수질오염으로 적발된 7곳은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방류수 허용기준을 초과한 29곳은 4633만원의 배출부과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인환경청, 15개 위반업소 적발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은 지난 7월 23일 남동공단 등 인천지역 공단 입주업체 126개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 여부에 대한 단속을 벌여 1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인환경청은 이중 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S정공 등 2개 업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

영한 T공업사 등 6개 업체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각각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K정밀 등 3개 업체에 대해 배출 및 방지시설 개선명령과 함께 30만~100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매겼다.

서울, 환경오염 배출업소 무더기 적발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무허가로 영업을 해 온 병원이나 업체 등 환경오염 배출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8월 5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4분기 동안 4천380개소의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 3.2%에 해당하는 위반업소 139곳을 적발했다”며 “이번에 적발된 사업체 중에는 병원이나 의원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시는 T산업 등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62개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린 것을 비롯, H산업 등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한 업소 22개소에 대해 폐쇄명령 및 사용중지 처분과 함께 당국에 고발했다.

또 방지시설의 운영일지를 기록하지 않거나 상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등 5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처분 등 의 조치를 내렸다.

D주유소의 경우 부유물질(SS)이 허용기준인 120mg/l를 3배 가까이 초과한

322mg/l 나 됐으며, C세차장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허용기준인 130mg/l 를 2배 가까이 초과한 250mg/l 나 됐다.

P주유소는 합성세제류의 농도를 나타내는 ABS 농도가 14.65mg/l 로 허용기준인 5mg/l 를 3배 가까이 초과했고 S금속은 구리(Cu)농도가 허용기준치인 3mg/l 를 3배 이상 넘어선 10.245mg/l 나 됐다.

Y의료원과 B병원도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초과로 적발됐으며 K의원과 H정형외과 등도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비율은 지난 1.4분기의 7.9%에 비하면 다소 줄어든 것으로 이는 월드컵 기간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오염물질 배출 8개업체 적발

영산강환경관리청은 최근 광주·전남 지역 산단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 66개 업체를 지도 점검, 모두 8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중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가 미흡

전북지역 공장과 병원 등 환경오염 배출업소 가운데 10% 이상이 환경관련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방환경관리청은 지난 4~6월 도내 환경오염 배출업소 338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10.4%인 35곳을 적발, 이 가운데 12곳을 고발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 여수시 A건설 등 3개 업체는 개선명령을,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순천시 서면 B업체 등 2개 업체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또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광주시 광산구 C업체 등 3개 업체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 영산강환경감시대는 영산강·섬진강 유역 환경오염 배출업체 10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도 병행, 광주시 북구 D산업 등 5개 업체에 대해 해당 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고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 광주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주환경청, 환경오염 배출업소

35개소 적발

전북지역 공장과 병원 등 환경오염 배출업소 가운데 10% 이상이 환경관련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방환경관리청은 지난 4, 6월 도내 환경오염 배출업소 338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10.4%인 35곳을 적발, 이 가운데 12곳을 고발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업종별로는 공장 22곳, 병원 6곳, 자동차 정비업소와 유통업체 각 1곳, 기타 5곳 등이다.

이 가운데 전북대병원 등 적발된 병원은 감염성 폐기물 보관시 전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밀폐 포장을 하지 않아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특히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적발된 전주 D자동차 정비공업사와 대기배출시설을 기동하지 않은 익산 I산업 등은 사용중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됐다.

